

고 소 장

고소취지

고소인은 피고소인을 강제추행혐의로 고소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.

고 소 사 실

고소인은 20〇〇. 〇. 〇. 〇〇:〇〇경 〇〇도 〇〇군 〇〇면 〇〇길 〇〇 소재 피고소인 경영의 '〇〇당구장'에서 피고소인 및 고소외 □□□과 같이 술을 마시던 중 고소인이 그 곳 당구장내에 있는 화장실에 갔다가 나오자 피고소인이 갑자기위 당구장의 전등을 소등하고 고소인에게 다가와 손으로 고소인의 가슴부위를 만지고 이에 놀라 뒤따라오던 고소외 □□□에게 안기자 재차 양손으로 고소인의가슴을 만진 후 고소인을 밀어 당구대위로 넘어뜨리고 가슴 및 음부를 수회 만져고소인은 이를 뿌리치고 나가려고 하자 피고소인은 앞을 가로막고 나가지 못하게하였으나 고소인이 구토증세를 보이자 어쩔 수 없이 비켜주어 위 당구장을 나오게 되었는 바 위 사고로 고소인은 인간적으로 심한 수치심과 모멸감을 느꼈고 피고소인의 이러한 행위를 법에 따라 엄벌하고자 이건 고소에 이른 것입니다.

소 명 방 법



1. 진단서

1 통

1. 목격자진술서

1 통

20 이 이 년 이 일 이 일

위 고소인 ○ ○ ○ (인)

			5
제출기관	범죄지, 피의자의 주소, 거소 또는 현재지의 경찰서, 검찰청	공소시효	○년(☞공소시효일림 ʌʌʌ
고소권자	피해자(형사소송법 223조) (※ 아래(1)참조)	소추요건	
제출부수	고소장 1부	관련법규	형법 298조
범죄성립 요 건	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때		
형 량	· 10년 이하의 징역 · 1,500만원 이하의 벌금		
불기소처분 등에 대 한 불복절차 및 기 간	 ○ 근거 : 검찰청법 10조 ○ 기간 : 처분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(검찰청법 10조4항) ○ (재정신청) ○ 근거 : 형사소송법 제260조 ○ 기간 :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동법 제260조 제2항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(형사소송법 제260조 제3항) ○ (헌법소원) ○ 근거 : 헌법재판소법 68조 ○ 기간 :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,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. 다만, 다른 법률에의한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(헌법재판소법 69조) 		

※ (1) 고소권자

(형사소송법 225조)

- 1. 피해자가 제한능력자인 경우의 법정대리인
- 2.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배우자, 직계친족, 형제, 자매. 단,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고소할 수 없음

(형사소송법 224조)

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할 수 없음[단,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에서는 "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24조(고소의제한) 및 군사법원법 제266조에 불구하고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다."고 규정함]